

[2025 박문각 행정사 1차 조민기 민법총칙 기본서] 정오표

※ 정오 사항은 [초판\(2024.9.10.\)](#) 발행 도서에 해당됩니다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119, 373p 민법총칙 조문 제50조	<p>제50조 [분사무소설치의 등기]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.</p>	<p>제50조 [분사무소(分事務所) 설치의 등기]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(主事務所)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24. 9. 20.], [시행일: 2025. 1. 31.]</p>
119, 373p 민법총칙 조문 제51조	<p>제51조 [사무소이전의 등기]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계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.</p>	<p>제51조 [사무소 이전의 등기]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24. 9. 20.], [시행일: 2025. 1. 31.]</p>
108, 373p 민법총칙 조문 제52조의2	<p>제52조의2 [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]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·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</p>	<p>제52조의2 [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]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·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<개정 2024. 9. 20.>, [시행일: 2025. 1. 31.]</p>

<p>116, 375p 민법총칙 조문 제85조</p>	<p>제85조 [해산등기]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,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.</p>	<p>제85조 [해산등기]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.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.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<p>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24. 9. 20.], [시행일: 2025. 1. 31.]</p>
---	---	---